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07.05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책임급

소속 : 혁신성장전략실

[상담 내용]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상담 결과]

[결과]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32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개정 주요내용

○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행위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3.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사전 서면 신고(사규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별지5호 신고서식 활용)
단,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내에 신고(소명)

보충질문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 및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되므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임

[결론] 금품등 수수시에는 위의 신고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하여야 하겠습니까.

[확 인]

2018.07.05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08.02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주임급

소속 : 기술전략실

[상담 내용]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상담 결과]

[결과] 아닙니다.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확 인]

2018.08.02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09.04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책임급

소속 : 경영지원처

[상담 내용]

대한전기협회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회원사에 5만원 상당 농산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지?

[상담 결과]

[결과] 청탁금지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선물에 해당하므로 농산물인 경우 10만원 이하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우리회사가 청렴윤리를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너무 튀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편하지 않다면) 마음만 받고 선물을 정중히 사절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나 분위기로 볼 때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결론] 청탁금지법상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중히 사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윤리경영 주관부서 입장입니다.

[확 인]

2018.08.02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10.05 [상담유형] 방문 전화 메일 기타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책임 소속 : 원자력사업처

[상담 내용]

임직원이 학회 참석시 학회에서 참석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상담 결과]

[결과] 청탁금지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회사 임직원에게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닌 참석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제공시설이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공받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일괄 제공하는 숙박시설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윤리경영 주관부서 입장입니다.

[확 인] 2018.10.05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11.15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책임급

소속 : 경영지원처

[상담 내용]

기관장이 그룹사를 방문하여 상대 기관장에게 회사 기념품을 선물해도 되나요?

[상담 결과]

[결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5만원(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문제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의 공식 홍보기념품(가액 범위 5만원 이내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론] 기념품을 선물하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나, 회사의 공식 기념품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확 인]

2018.11.15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11.27 [상담유형] 방문 전화 메일 기타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수석급 소속 : 원자로설계개발단

[상담 내용]

2017.1.1일자로 퇴직하였는데 협력사 '미래와도전' 취업 가능한지요?

[상담 결과]

[결과] 확인해보니 불가합니다.
2017.1.1일 퇴직일자로 재산등록면제되어 기산일이 2017.1.1일 입니다.
그리고 '미래와도전'은 우리회사 원자력 협력사 이므로 취업심사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 안타깝지만 취업가능일은 기산점으로부터 3년경과한 2020.1.1일 이후 입니다.

[확 인] 2018.11.27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12.24

[상담유형]

이메일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원급

소속 : 기계설계그룹

[상담 내용]

부서 업무용 장비 제공 업체에서 작은 텀블러를 하나 보내준다고 하는데, 수령해도 되나요?

본인이 장비 도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결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와 피상담인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으며,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미래에도 업무 연관성이 예상되므로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받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및 반환하여야 합니다.

[확 인]

2018.12.24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01.07 [상담유형] 방문 전화 메일 기타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소속 : 퇴직자

[상담 내용]

정년퇴직하였는데 스마트파워(주)에 취업 가능한지요?

[상담 결과]

[결과] 확인해보니 이상 없습니다.
스마트파워(주)는 취업제한기관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결론] 취업가능

[확 인] 2019.01.07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02.11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책임급

소속 : 감사실

[상담 내용]

타 기관에서 위원회 참석 요청이 왔습니다. 해당 활동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상담 결과]

청탁금지법 상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회의, 공청회 등 또는 교육은 모두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우리회사는 직무에서 유래되는 모든 외부활동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임직원윤리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외부활동에 대하여 신고 및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 인] 2019.02.11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03.12 [상담유형] 방문 전화 메일 기타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소속 : 퇴직자

[상담 내용]

정년퇴직자인데 (주)고려컨설팅트에 취업 가능한지요?

[상담 결과]

[결과] 확인해보니 이상 없습니다.
(주)고려컨설팅트는 취업제한기관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결론] 취업가능

[확 인] 2019.03.12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04.03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원급

소속 : 경영지원처

[상담 내용]

국회의원 조사에 임원이 부조하는 경우 가능한 가액 범위가 궁금합니다.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2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가액범위가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 만일, 우리회사 소관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조사인 경우에는 밀접한 직무 이해관계가 인정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부조해야 할 것입니다.

[확 인] 2019.04.03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05.29 [상담유형] 방문 전화 메일 기타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선임급 소속 : 혁신성장실

[상담 내용]

아기 돌잔치후, 소속부서 직원들에게 떡이나 수건을 돌려도 되나요?

[상담 결과]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소속 직원들에게 떡이나 수건을 돌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확 인] 2019.05.29 윤리경영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06.02

[상담유형]

방문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주임급

소속 : 혁신성장실

[상담 내용]

퇴직자와 친목도모 모임에서 만나는 경우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인가요?

[상담 결과]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확 인] 2019.06.02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06.19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책임급

소속 : 원자력사업관리실

[상담 내용]

신고리 현장 개소식 행사에서 떡을 돌리기로 했는데, 발주처(한수원)에 제공해도 되나요?

[상담 결과]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에 의거,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건의 경우, 제8조 3항 6호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음식물)로 판단되므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3항 예외사유 中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확 인] 2019.06.19

윤리문화팀장 정상인